

예식장 식대·대관료 ‘줄인상’...예비부부·하객은 ‘울상’

고물가·리모델링 비용 이유 광주지역 업체들 인상 예고에 지역민 우려 “축의금 얼마?” 고민 속 ‘밥 먹으면 10만원, 불참하면 5만원’ 옛말될 듯

“밥 먹으면 10만원, 불참하면 5만원”이라는 결혼식 축의금 공식이 옛말이 될 수 있다.”

고물가에 광주지역 결혼식 업체들이 줄줄이 식대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장 대관료까지 인상돼 결혼 성수기인 9~11월에 웨딩마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8일 광주지역 결혼식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웨딩홀 대부분이 물가 상승률과 리모델링 비용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식대와 대관료를 인상한다.

타 웨딩홀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예비 신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광주시 서구의 한 웨딩홀은 내년 초에 1인당 식대(현재 6만 5000원)를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광산구의 인기 웨딩홀도 요일별로 다르지만 기존 5만2000~5만9000원이던 식대를 9000원 올리기로 했다.

서구의 한 웨딩홀은 5만원대 초반이던 1인당 식대를 6만원대로 올리고 광산구의 한 웨딩홀도 5만 4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북구 한 웨딩홀도 식대가 1만원 가량 오른다.

업계에서는 식료품의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식

대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예식업계의 식비, 대관료 줄인상은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민들은 축의금 부담도가 증가되고 있다.

올해 연말 회사 동료 결혼식에 갈 예정인 김운지(여·29)씨는 벌써부터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지인 결혼식은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있을텐데 갈수록 식대 비용이 높아지면 축의금 액수를 얼마까지 높여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축의금 들고 결혼식장에 가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식장에 가지 않고 마음만 전하는게 원원일까 싶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정모(36)씨는 “요즘은 식대가 많이 올라서 5만원만 내고 오면 찝찝하다”면서 “식장에서 신랑·신부 얼굴만 보고 돌아서고, 밥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결혼식장들이 식대 뿐 아니라 대관료 인상도 앞두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발걸음을 무겁게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의 웨딩홀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북구의 한 웨딩홀은 2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광주지역 한 결혼식장 관계자는 “웨딩홀의 경우 최신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물가를 생각하면 대관료를 높일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원(결혼식장 최소 식사인원)까지는 늘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식대인상과 대관료 인상까지 고려하면 내년 500만원 정도의 인상이 불가피 한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예식 수요가 늘

어 이미 광주지역 웨딩홀 예약은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이 다 차 있는 상황이라 예비 부부들은 “지금 가장 저렴한 때”라며 올해 겨겨먹기로 1년 전부터 선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예비 부부들은 황금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를 피해 예식을 치르거나 상담을 통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비부부들의 호소이다.

한편, 광주시가 광주시민 2168명을 대상으로 진행(지난달 1~7일)한 ‘2040 세대가 선호하는 결혼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7.3%(1459명)가 ‘실내 웨딩홀’이라고 답했다. 결혼식장 선택시 고려하는 사항에는 하객 식사(52.4%), 가격(3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한복, 외국인이 입어도 잘 어울리네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혼수의 거리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에서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를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양보건대, 서남학원 등 대상 횡령 교비 반환소송 패소

광양보건대 운영법인이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흥복학원 설립자 이모씨의 범행으로 타 대학 법인으로 흘러간 교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과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심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모두 이씨가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이다.

이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피고 측 학교법인을 포함해 전국에 6개 대학법인 등을 설

립하고 교비 1003억원을 횡령해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양남학원은 이씨와 다른 학교법인 2곳이 버리를 저질러 수백억원 대의 손해를 발생했다며 공동 책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범행은 인정했지만 학교법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이씨와 피고 측 학교법인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전체 손해액의 일부인 7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피고 학교법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원고인 양남학원의 횡령 피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해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 산하 대학교 뿐만 아니라 피고를 산하 대학교들도 이씨의 교비 횡령 범행의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씨가 피고 측 대학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원고 측 교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자금을 조성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모든 법인에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대학에서 횡령된 교비가 그대로 피고 대학으로 입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자녀 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적발됐다면? 광주지법 “아동 교육권 보장 특례제도 해당...출국명령은 가혹”

대한민국 초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외국인여성노동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적발됐다면 곧바로 출국해야 할까.

법원은 출국명령으로 여성노동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는 2018년 12월 11일 미성년자 2명(당시 4살, 1살)을 데리고 국가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체류기간 만료(2019년 1월 10일)에도 국내에 머물면서 지난해 12월 광양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에 적발됐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자녀 2명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사정 등을 감안해 ‘강제퇴거 명령’ 대신 올해 1월 6일을 기한으로 한 ‘출국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임신 중

(올해 10월 출산 예정)인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로서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공익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A씨 첫째 아들은 특례제도에 따른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둘째 아들은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체류 중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특례제도 취지로 미뤄 A씨가 출국하게 되면 5년간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 판단 잘못...상고할 것”

직권남용 혐의 등 직위상실형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정박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박자 등의 이름이 적힌 이력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은 모두 인정했지만, “채용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